

제42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9일(수)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현안질의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88인 발의)(의안번호 2209248)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2
-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2
-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2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제출) 22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9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88인 발의)(의안번호 2209248) 30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30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30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0
- 긴급현안질의 35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철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 다섯 가지,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둘째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셋째 포고령 발령, 넷째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다섯째 법조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파괴했을 때는 가차 없이 그 직을 박탈한다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과연 내란은 종식되었는가?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곳곳에서 현재의 판결에 불복하고 내란을 옹호·선동했던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적을 물리쳤다고, 이제 내란은 완전히 진압됐다고 안심하기에는 곳곳에서 위험하고도 위협스러운 징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피로 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적은 공동체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2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입니다.

3월 3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성윤·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며, 셋째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는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 법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자 지명을 하되 추천 경로는 달라도 현재의 구성 체계나 자격, 기능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현재 구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통령 뜻의 것을 지명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은 무조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이게 현재 구성원의 9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뜻도 같이 임명해야 된다는 식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추천 경로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정략적인 법안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헌법 규정에도 반합니다.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박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법안을 보면 이게 지금 법안 내용이 추가되고 내용이 그러한 것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법안을 내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현재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현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왔는데 임기 연장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된 임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법안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조치대로 그것을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무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현재 입장은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현재 저희는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파면은 헌법재판관 8 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5개 쟁점 모두 다 인용돼서 40 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현재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현재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현재 대통령은 없는데 대통령 봇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현재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현재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아파서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된 상태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탄핵심판 결정이 인용이 돼서 직위에서 물려난 상태입니다.

○서영교 위원 파면된 상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또 헌법 위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려고 하고 그리고 군인을 동원하고 총을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하고, 법원행정처장님 있지만 법관을 체포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인용돼서 대통령은 파면된 겁니다. 이런 대통령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는 상태입니다.

○서영교 위원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국민들께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봇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봇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봐 왔던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일 뿐,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불비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기니까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돼요, 파면된 다음에. 그런데 혹시나 할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혹시나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묻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후임이…… 직무를 수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 그리고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되고 난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봇을 임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서영교 위원** 예, 첫 번째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어떤……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영교 위원** 첫 번째 질문, 헌법재판관이 임무를……

그러면 이것만 답변하세요. 헌법재판관이 임무가 끝났습니다. 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때 있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지만 다음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가진 나라와 법률 규정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증인·참고인 등 출석 포함해서 양 간사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헌법재판관 2명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제도라는 것은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당연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현상 유지라느니 그런 말을 갖다 붙여 가지고…… 어디에도 규정해 놓은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설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하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이 있을 뿐인 겁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곽규택 위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드렸을 때,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곧 끝나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사무처장님 분명히 그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요.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은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헌법에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래서 공석이 발생을 하면 그 공석이 충원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을 해서, 2명을 임명해서 빨리 궐위 상태를 막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나중에 2명이 새로운 정부에서 지명될 때까지 현재 재판관의 임기를 늘린다, 이런 변태적인 법이 어디 있어요. 현재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그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신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과 무슨 권한이 충돌하는 것이지요?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이 궐위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장래에 대통령이 될 사람의 권한과 현재 대통령직무대행과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 그런 것을 무슨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무처장님,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래서 오늘 올라온 이런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의 2명 헌법재판관 지명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토론할게요.

지금 국힘에서는 계속 권한대행도 지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볼까요?

전두환 내란, 노태우 내란, 윤석열 내란 그리고 또 보니까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두 번 연속 탄핵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잡더라도 저 당에서 배출하는 대통령은 내란과 탄핵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깔아 놓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헌법 해석입니까? 내란의 공범들 아니고서는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님? 내란 인정했지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탄핵심판 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민 위원 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부분의 내란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민 위원 내란행위가 인정됐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결정문 취지에 보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설시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맞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4월 4일 날 파면되니까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버립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임명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2명을 자기가 임명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용민 위원** 윤석열 구속 안 시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 직권남용 구속 안 시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란에,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 중입니다.

○**김용민 위원**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1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고발·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수사 대상이지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지명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다만 저희가 부칙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법을 발의했을 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이미 지명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지명되고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예 법을 그냥.....

○**김용민 위원** 지명한 게 잘못이지, 그것 창피하지 않아요?

○**서영교 위원** 하지 말라고 해야지, 국힘이.

○**위원장 정청래**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유상범 위원**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시키는 걸 부끄러워해야지.

○**김용민 위원** 그것 헌법에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자, 조용히 좀 하시고요.

○**유상범 위원** 아이고, 그게 또 뭘 헌법에 있어.

○**김용민 위원** 헌법 보세요. 읽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좀 하시고요.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위원장 정청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현재 결정문, 114페이지 판결문인데요. 이것 안 읽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읽어는 봤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읽어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부정확하게 하십니까?

윤석열 측에서 제기했던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규정을 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법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 그렇게 헌법에 포섭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으로는 이 판결문에도 계속 내란죄라든가 계엄법 이런 게 나옵니다, 헌법에 포섭해서 했고. 그래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도 단죄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이 결정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을 현재 사무처장께서 읽어 보셨다면서 그렇게 부정확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곽규택 위원** 내란죄를 선고한 적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유상범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철회를 본인이 해 놓고선 거기다 내란죄가 포섭이 됐다고 어떻게 그래요? 모순이지, 그게.

○**박은정 위원** 그게 내란이에요! 그게 내란행위지.

○**위원장 정청래** 현재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 보세요.

○**곽규택 위원** 읽어 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박범계 위원** 안 읽어 본 것 같아, 곽규택 위원은.

○**곽규택 위원** 열심히 다 읽어 봤어요.

○**위원장 정청래** 안 읽어 보고 읽어 본 척하지 마시고, 읽었어도 건성건성 읽었으면 현재 판결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말이 거기 어디 있어요?

○**유상범 위원** 거기에 내란이라고 단죄한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다음 토론하실 분?

아까 누구 했지요? 이쪽인가요, 이제?

박범계……

아, 김용민 위원 했구나.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하세요.

○박은정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면춤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 내란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재판관이 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한덕수, 최상목 등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말 초유의 반헌법적인, 헌법 파괴적인 상황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가치가 살아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심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후에 조기 대선 기간 중에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헌법학자회의 등등 모든 헌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뜻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정식 대통령이 지명하기까지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또다시 멈출 것인가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블랙아웃, 면춤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뜻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무처장님, 한덕수 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은정 위원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없고 전쟁 선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유효하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도 본인이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나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위낙 중대한 사안이었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판결을 다 승복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현재 판결문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들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지금 박은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 계시는 기관장들께서 판결문을 안 읽어 보셨는지, 읽어도 무시하시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판결문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밀푀개헌부터 유신헌법, 독재, 전두환 비상계엄·군사반란 이런 것이 다 기술이 돼 있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은 국회해산권도 없애 버렸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역사를 다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현재의 이 판결문이 우리가 22분 요지만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읽어 보면 이번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성과 헌법,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판결문을 작성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은 모든 국가기관과 모든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현재 사무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때 참조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지난 31일 법사위에서 심하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촉구했던 너무 심했던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훌륭한 8 대 0의 결론을 내리실 것으로 알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산불의 잔불이 다 꺼진 걸로 알았는데 내란의 잔불, 잔내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실질적으로 내각과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월밖의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파면된 윤석열의 죄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그렇게 능멸을 시키느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전 국민이 경악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을 당장 한덕수 대행은 취소해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 꼼수를 가

지고 이러한 못된 임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이……

우리 민주당도, 5야당도 국민의 역풍을 두려워해서 상당히 정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국 차원에서 전원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켜서,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 중지를 시키지 않으면 이 알 박기 인사가 계속됨으로써 나라가 망한다, 구국 차원에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위원** 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이게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우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한국법학교수회에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취소해라’, 법학교수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을 과면함으로써 국민이 축제고 신나고 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에서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대행으로 그의 수족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함으로써 일거에 나라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혼란으로 돌아갔어요. 나라가 또 망해요.

나는 이완규 법체처장에게 묻습니다.

과거 당적 보유나 집사 변호사나 안가 회동이나 지금까지 빠져나왔지만 만약 당신이 헌법재판관을……

○**유상범 위원** 당신이라니, 표현이 그게 됩니까, 도대체?

○**박지원 위원** 당신이 헌법재판관을……

○**유상범 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박지원 위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이 되겠는가. 그래서 용기 있게 구국 차원에서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 할 용의가 있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

○**유상범 위원** 자, 그만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정도 되면 됐지. 아예 마이크 끄고 혼자 하시지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박지원 위원** 9수, 8수 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법조인의 길을 갔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본인이 과면된 친구 윤석열을 돋는 일은 안 하는 일이에요. 수용하지 않고 사퇴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6년간 헌법재판관 해서 이 나라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박지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참고하는 것은 사퇴예요.

.....

○유상범 위원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도대체.

○위원장 정청래 다음,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가장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 생각해서 들으세요.

○송석준 위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서영교 위원 발언하세요.

○박지원 위원 남 말할 때는 졸랑졸랑 나서고 자기 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곽규택 위원 박지원 위원님한테 아무도 졸랑졸랑 안 했어요.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해!

○서영교 위원 어디다가!

○김용민 위원 예의를 좀 지킵시다.

○유상범 위원 아니, 박지원 위원님, 우리가 마이크 켜 있을 때 얘기했어요? 마이크 끄고 몇 분을 하셨어요? 적당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배가.

○서영교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한 상황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자, 조용히.....

○유상범 위원 그리고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박지원 위원 당신이지 그러면 뭐예요?

○서영교 위원 파면을 그렇게 옹호하다가.....

○유상범 위원 그러면 나도 당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박지원 위원 당신이라고 해요.

○서영교 위원 어디다가 삿대질이야?

○이성윤 위원 아니, 위원장이 가만있는데 왜 그러세요?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한 것 아니에요.

○박지원 위원 당신은 높임말이야!

○유상범 위원 그게 높임말이에요?

○박지원 위원 당신은 높임말이야!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하시라는 말이에요.

○박지원 위원 뭐라고 해야 돼, 저 사람한테?

○위원장 정청래 양쪽 다 자제하시고요. 자제하시고요.

○조배숙 위원 예의를 갖추세요.

- 서영교 위원 국민의 힘은 사과부터 하세요.
- 조배숙 위원 예의를 갖추세요.
- 유상범 위원 서로 예의를 갖추라고……
- 위원장 정청래 자제하시고요.
- 서영교 위원 유상범 간사는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 곽규택 위원 뭘 사과를 해.
- 김용민 위원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돼, 사퇴.
- 서영교 위원 사과부터 하세요, 국민 앞에.
- 이성윤 위원 해체해야 돼요, 해체.
- 장경태 위원 내란행위에 대한 반성도 잘못도 사과도……
- 서영교 위원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을 옹호하더니.
- 이성윤 위원 작년 내내 내란을 부정하고.
- 김용민 위원 1호 당원이 내란범인데 의원직 총사퇴해야지.
- 서영교 위원 그렇게 윤석열을 옹호하고 여기 와서 또 그래?
- 장경태 위원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번주, 지난주에 인용이 됐는데, 탄핵이.
- 김용민 위원 지금 무슨 낯으로 여기 들어옵니까? 의원 총사퇴해야지.
- 곽규택 위원 무슨 사과를 해요?
- 위원장 정청래 자, 조용히들 하세요.
- 장경태 위원 내란행위 옹호하던 정당 아닙니까?
- 서영교 위원 사과해야지요, 당연히.
- 김용민 위원 의원직 총사퇴해야 돼.
- 위원장 정청래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 서영교 위원 관저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 주진우 위원 북한에 돈 퍼 준 거나 사과하세요.
- 장경태 위원 머리나 조아리고 말이야, 관저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 서영교 위원 관저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 주진우 위원 북한에 돈 퍼 준 거나 사과하세요.
- 김용민 위원 우리가 내란 정당이야? 그쪽이, 내란 정당이 사과해야지.
- 주진우 위원 그러면 외환 정당이에요?
- 서영교 위원 채수근 상병 사건도 이제 수사해야 돼요.
- 이성윤 위원 작년 내내 내란 비호했잖아요.
- 위원장 정청래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 김용민 위원 아무도 책임 안지고 아무도 사퇴할 용의도 없고.
- 서영교 위원 700-8080도 수사해야 돼, 주진우 위원.
- 장경태 위원 우리는 기분 좋아서 참고 있는 줄 아나 보네.
- 위원장 정청래 자, 조용히 하세요.
- 박은정 위원 나중에 다 해산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세요.

○김용민 위원 책임질 용기도 없어.

○위원장 정청래 시작하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시작이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시작하세요.

○송석준 위원 엄중하게 경고를 좀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송석준 위원 경고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하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 제가 기다려 보니까 심해도 너무 심해요.

○박은정 위원 저 때는 더 심하셨어요.

○위원장 정청래 시작하세요.

○서영교 위원 사과부터 하세요.

○장경태 위원 저희도 참고 있잖아요.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송석준 위원, 사과부터 하세요.

○곽규택 위원 질의하는 위원한테 뭘 사과하라 그래요?

○위원장 정청래 자, 시작하세요.

○서영교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곽규택 위원 뭐가 그래요?

○서영교 위원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송석준 위원 지금 시작하라고 명령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권한, 송석준 위원의 3분 대체토론 권한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토론 시작하세요.

○송석준 위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발전 또 포용적·모범적 제도를 갖춘 나라입니다. 우리 법사위 바로 이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법치주의를 지킬 핵심 상임위입니다. 이번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 판결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수용합니다. 판결문에 나오지만 엄중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셨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든 위헌적·위법적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거나 조장하거나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1·2호, 3호, 9호까지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를 보면 또다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입법과 탄핵소추안이 또 이렇게 벼젓이 이곳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현재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안건 이렇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안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 이 헌법재판소법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

민국은 삼권분립, 우리 헌법재판소 구성도 입법부에서 추천하고 사법부에서 추천하고 행정부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아홉 분이 구성이 됩니다, 세 분씩.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절위되거나 유고 시에는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하는 법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또 탄핵 남발, 이제 삼십 번째 오늘 올라가지요. 이렇게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가 자행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것조차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소리치셨지만 여러분들이 자행하고 있는 입법 폭주, 탄핵 남발, 6월 3일 날 엄정히 국민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은 여러분들 용서한 게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송석준 위원 여러분들의 입법 독재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가세요.

○송석준 위원 정신 차리세요.

○이성윤 위원 용산 가서 그려세요, 용산 가서.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번 심판 받아서 내란 동조 세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 토론하실 분은 박범계 간사님.

○서영교 위원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위원장 정청래 자, 이렇게 하시지요. 박범계 간사님 하시고 유상범 간사 하시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박희승 위원 저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손 들었는데.

○위원장 정청래 이따 현안질의도 있기 때문에요. 같은 사항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 때 해 주시고 양 간사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김정원 사무처장님, 현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총리, 즉 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구분을 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 표현 구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범계 위원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크고 반면에 총리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총리가 행정부 내의 어떤 기관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

라 헌법기관, 다른 헌법기관인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수도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고유의 민주적 정당성과 소위 현재가 인정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가 뭐예요? 구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제 견해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입론이 가능하겠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 견해가 틀린 견해로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뭐 그거를……

○**박범계 위원**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낮다고 현재가 판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들을 그렇게 제약 없이 자체 없이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똑같은 결론이 되는 거지요. 그건 현재의 결정에 반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어떤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다시 또 묻습니다.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들어 봤습니다.

○**박범계 위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나온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파면된 대통령에 의해서 과거에 임명된 총리, 권한대행이 이차적인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행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독수독과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한 공모 혐의도 한때 받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클리어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시중에 지난번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다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파면 선고를 연기해서 그 뒤에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두 분의 재판관을 보수적인 인사로 임명해서 결국은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킨다는 그러한 기사까지 났고 여권에서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수독과 이론에 의할 때도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가 꺼졌지만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대통령 뜻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6조 1항 단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부칙 조항을 수정안으로 넣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체크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놀이를 하고 내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비상계엄이 종료되는 즉시 내란도 종료된다’ 그래서 내란의 종료 시기를 비상계엄 해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가 있는……

○**유상범 위원** 판시가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상범 위원** 6시간 만에 내란 해제가, 다 끝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란, 내란하면서 온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있는 이게 민주당의 내란 놀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란이 끝났으면 내란이 종결됐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내란이라고 내란 동조니 내란 선동이니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말이지요.

○**박희승 위원** 말을 심하게 하네.

○**서영교 위원** 국민에게 저런 표현을 써?

○**박희승 위원** 국민한테 개돼지라는 표현은 너무 심한 거지.

○**유상범 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직도 내란 선동이라고 하지 않냐고……

○**박희승 위원** 본인이 개돼지라고 생각하시는……

○**서영교 위원** 어떻게 국민에게 그런 표현을 써!

○**박희승 위원** 개돼지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서영교 위원** 어떻게 국민에게 그런 표현을 써요!

○**유상범 위원** 앞뒤 말을 좀 잘라서……

○**곽규택 위원** 안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박희승 위원** 국민을 개돼지로 봐!

○**김용민 위원** 내란행위에 대해서 반성 한마디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사과부터 해요. 사과부터!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자제하시고요.

○**서영교 위원** 유상범 간사 정말 도를 지나치네.

○**위원장 정청래** 자제하시고요.

○**박희승 위원** 계속 말을 깬죽깐죽하더니……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님, 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자, 보십시오.

○**서영교 위원** 도가 지나치네, 아주.

○**주진우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

○**김용민 위원** 선을 세게 넘으시네, 아주 그냥.

○**유상범 위원** 이 개정안 보세요. 이 개정안을 보시면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겠지요.

처장님, 그렇지요? 이 규정에 의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만이 적용이 되겠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희가 입장을……

○**유상범 위원** 아니, 규정 형식을 보면 뻔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을 개정하면서 특정 헌법재판관이 그대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만 법을 개정한 거예요.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이후에 또 임기가 만료된 대법관 이 사람들은 그다음 후임이 임명 안 됐을 때,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이 법 적용을 못 받아요.

○**서영교 위원** 적용받지 왜 못 받아.

○**김용민 위원** 받지 왜 못 받아요?

○**서영교 위원** 당연히 적용받지.

○**유상범 위원** 개정 당시에 법을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인설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의 규정에 반하고 위인설법 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계속 보임하게 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궐위된 상태에서 대행이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궐위 상태에서는 사고와는 달리 더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헌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서영교 위원**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장경태 위원** 제일 위인설법이 구속 시간이에요, 구속 시간.

○**이성윤 위원** 맞아요.

○**서영교 위원** 직권남용이야, 그게.

○**장경태 위원** 제일 위인설법이지, 그게.

○**박은정 위원** 그러면 재판관 없어도 됩니까?

○**서영교 위원**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박은정 위원** 없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구속 시간으로 바꾸자니까.

○**주진우 위원** 조용히 합시다, 질의하는데.

○**유상범 위원** 그래서 소위 헌법학의 대가인 권영성 교수나 정종섭 교수 모두 궐위의 경우에는 필요한 국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이미 판시하고 있어요.

사고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권한 행사가 제한되지만 궐위가 되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행이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결국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서영교 위원** 직권남용이라니까.

○**장경태 위원** 모든 헌법학자들이 다 현상 유지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 서영교 위원**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 이성윤 위원** 이견 없는 통설이라고 했어요, 이견 없는 통설.
- 장경태 위원** 학계 통설인데 무슨……
- 유상범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헌법학자들의 이 주장은 다 알고 계시지요?
- 박은정 위원** 정설, 정설.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그런 게 없다잖아요.
- 박희승 위원** 검사를 오래 하셔 가지고 지금 민법 총칙도 안 읽어 본 거 같아.
-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

○**장경태 위원** 그러면 대통령 승계를 하시지 그냥. 대행을 왜 해,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거면 승계해야지.

○**위원장 정청래**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박희승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한 거 사과받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박희승 위원** 있어요!

○**서영교 위원**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

○**박희승 위원** 지금 녹음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잠깐 3분간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일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

○**위원장 정청래** 그 얘기를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장 이완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전부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위원장 정청래**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

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이완규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 말에 동의를 못 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저 말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의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대행께서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정청래 아니, 동의를 전체적으로 못 한다고 했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동의를 못 하는 그 발언을 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어쨌든 한 대행께서는 여러 가지……

○위원장 정청래 됐습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헌법 11조 기억하실 거고 헌법 84조 기억하실 겁니다.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지요. 대통령이 아니지요.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직이 파면됐고 대통령 권한이 파면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현상 유지만, 필요한 것만, 필수 불가결한 것만 대행이 그 역할을 해라, 안 그러면 국가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현재 사무처장 말씀하신 그런 일반론에는 동의하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위헌이고 이번 현재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박희승 위원 유상범 간사 아까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국민을 개돼지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민주당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 내란 선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곽규택 위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주진우 위원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민주당 위원을 그렇게 모욕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아니, 언제까지 내란 놀이 할 거예요?

○김용민 위원 내란 놀이가 아니라 내란이잖아!

○조배숙 위원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말 받아서 한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서영교 위원 정치인이 국민에게 그런 표현을 써도 돼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써!

○위원장 정청래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세요.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위원장 정청래 그 부분은……

○서영교 위원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

○곽규택 위원 회의록 보세요, 회의록.

○유상범 위원 국민을 그렇게 선동하지 말아요.

○서영교 위원 사과할 줄 알아야지.

○위원장 정청래 그 부분은 일단 속기록을, 지금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속기록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양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국민 개돼지 발언 윤리위 제소’ 이렇게 기사 남는 것보다는 사과하는 게 나을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민주당을 빗대서 그따위 표현을 해 놓고……

○장경태 위원 평생 박제되니까.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을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6조 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수정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이의가 없습니까?

○유상범 위원 이의가 있지요, 당연히.

○박범계 위원 가만있어, 왜?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위원님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유상범 위원 알면서.

○박범계 위원 주진우 위원은 왜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타위법 및 청문회 관련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위 관련 국토부장관께서 출석해 대기 중에 있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좀 변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장들께서는 잠깐 이석을 하셔서 장내 정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57분)

○위원장 정청래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 기간 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2·29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5항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위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2·29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로론에 앞서서 박상우 장관께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동 법안은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간에 특위에서 제정이 된 제정법안입니다. 각각 다섯 분의 의원들이 제출하신 법안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법안을 대안으로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정청래 내용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또 유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이분들에게, 앞으로 이분들이 단체활동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추모사업을 위한 재단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재단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한쪽에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이 느끼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정신적·의료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위원님들의 토론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위원장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저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간사도 제가 좀 만나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에 대해서는 국고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단 전에 피해자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지원할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의 날 이것을 특별법 이 법에 하기로 했습니까, 일반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반법의 항공안전법에, 국토위에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12월 29일……

○위원장 정청래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혹시 장관님께서, 이게 지금 특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활동 기간이? 그래서 여야 간에 잠정적으로나마 특위 활동 기간을 좀 연장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 두 개의 소위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소위고 그 소위는 아마 법률이 제정이 되면 큰 역할은 다 마치는 것

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위가 원인 조사와 진실규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가 미리, 닥쳐서 하지 말고 특위 연장안에 대해서 미리 좀 합의를 해 놨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조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가족 대표분들께도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100% 만족하지 않는 법이라도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것보다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국회와 유가족 그리고 국토부와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드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더라도 이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조언의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분들 만났기 때문에 도움드리는 차원에서, 토론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 이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먼저 하세요.

○유상범 위원 감기가 걸려서 미안합니다.

이번에 사실 이 비행기 참사는 가장 문제가 일가족들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15세 미만의 유족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이들을 계속 돌봐 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11조에도 보면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규정을 넣으셨더라고요. 이게 상법상 규정에 의해서 하는 시민안전보험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그에 준하는 특별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도 유가족 만나 봤더니 제일 먼저 생계도 생계지만 부모를 잃은 자녀들의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체 숫자 말씀이신가요?

○유상범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열 가족 조금 가깝게 돼 있고요.

○유상범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리고 말씀하신 15세 미만은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미리 사회재난보험을 들어 놓는데 상법 규정에 의해서 15세 미만은.....

○유상범 위원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대신에 이 법에 근거를 둬서 특별히 보험금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린 자녀들을 하여튼 간 성장하는 동안 케어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건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보니까 근로자 치유휴직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청 기간을 3년, 휴직 기간 1년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PTSD 증상이 한 3년 뒤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것을 좀 많이 확장을 하셨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과거보다 좀 확장해서 폭넓게 보호를 하는 규정을 지금 뒀습니다.

○**유상범 위원** 유가족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좀 도와 달라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저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결국은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과 대화를 해서 가능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각오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 토론하실 분이요.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장관님, 참사 발생 직후에 장관님이 사고 현장에 오셔서 장기간 상주를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균택 위원** 사고 수습에도 도움이 됐고 유가족들 위로하는 데도 작은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법에 또 여러 가지 조금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그래도 어쨌든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족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속도가 너무 늦다, 이 부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균택 위원** 사고의 진상규명 또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조차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1년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정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반이나 걸리는 이유가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 이쪽에서, 미국 쪽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그 과정이 보통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1년 반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전례에 입각해서 그 정도 기간을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미국의 교통위원회는 보통 1년씩 걸리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그 이유가 뭐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 이유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게 이제 사실은 비행기가 국내 항공사고, 국내에서 사고가 났지만 비행기 제작사 또 탑승객 중에는 태국 분 같은 외국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또 보험도 재보험까지 치면 사실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이 투명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라든지 그 당시 운항 문제 또 기계적인 결함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것들이 한두 명의 결론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확인하고 동의를 해 줘야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이게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유가족들이 빨리 결론이 나서 보상도 좀 빨리 받고 책임자 처벌도 빨리 해야 한도 풀고 좀 시원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서두르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바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참 저도 답답한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씩이나 걸리는 관행이 정말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구 선진국들의 특유의 조금 이런 여유라든가 관행이나 혹시 타성 때문은 아닌지, 혹시 후자라고 한다면 좀 국토부에서 더 독촉을 해 주시면 어떨지 그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제적인 관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시면……

송석준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먼저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장관님, 정말 이렇게 끔찍한 여객기 참사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항공 최강국, 가장 세계에서 우수한 항공의 이런 서비스 그리고 또 항공 운항 능력, 모든 면에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로컬라이저 설치 그게 기본적으로 어디나 있는 건데 땅속에, 겉으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그 속에 그런 콘크리트 장벽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석구석에 이렇게 정말 예기치 않았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위험 요인들이 있다는 것 장관님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말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항공 주무 당국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일이 항공뿐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교통 전 분야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일단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편의주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속에 잠재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를 원칙에 입각해서……

근본적으로 항공, 공항 주변은 어떤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해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제거하고 또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항공기 참사였지만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 철도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각종 다중이용시설들 또 우리 사회의 각종 교통 관련 시설들에서 혹시 예기치 못했던 이런저런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든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12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우선 항공 분야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은 4월 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관계 전문가위원회를 꾸려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항공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철도라든지 도로 또 그 외에 육상교통 등등 사실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부 이름이 국토교통부고 약칭으로 국토부라고 많이 불립니다마는 국토교통안전부라는 각오로 그런 전 분야에 걸쳐서 규정을 고칠 건 고치고 직원들의 행태나 마인드를 바꿀 건 바꿔 가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법이 이제 참사 대응 마지막 특별법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다시 한번 제주항공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에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례적으로 계속 상주하면서 노력한 것은, 제가 무안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한 시간 거리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서 전남 도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마는 특별법 제정도 여야가, 정부가, 유족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것은 높이,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유족들은…… 제가 저희 민주당 해남 지구당 지역구 사무실에 세입 돼 있는데 그 빌딩 주인이 지난번에 희생돼서 그 형님이 유족대표자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주인 동생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해남에 가장 큰 좋은 빌딩을 지어 놓고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러한 희생들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국민은 신속 정확하게,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신속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희생자는 물론 피해자에 대해서 보·배상을 빨리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관님, 무안공항에서 저랑 만났을 때 그 얘기 했지요, 추모공원 같은 것?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법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 좀 생각해서 신속하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이번 무안공항처럼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일하면 존경받으리라고 봅니다.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지원 위원** 법사위원 중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거듭 감사와 신속 정확한 조치를 바라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하위 법령 마련과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유가족 대표들이 법사위원회장을 찾아와서 ‘이 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유가족 대표들께서 실제로 사고 당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 트라우마를 생생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참사도 참사겠지만 특히 이번 참사는 굉장히,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목격한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국토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국토부장관에 대한 원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그래도 국토부장관께서 성심성의껏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국토부장관에 대한 원망이 없듯이 앞으로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과 소통하고 최대한의 지원과 위로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아까 박희승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간사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내란이 종식됐다 하는 명확한 판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지나가도 아직도 내란 선동이냐, 내란 놀이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와 이어지

는,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얘기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내란이라고 내란 동조니 내란 선동이니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희승 위원 그 워딩이 약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히 들은 걸로는……

○곽규택 위원 워딩이 맞아요.

○유상범 위원 이것 녹취록에서 받은 거예요.

○박희승 위원 민주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걸로, 그런 취지로 표현했는데 지금 워딩이 너무 약합니다.

○곽규택 위원 제가 옆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 부분은 간사 간에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각자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걸로 하고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 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잠깐만. 안 들었다니까.

○김기표 위원 막판에 들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정말 안 들었다니까요.

○김기표 위원 막판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인정할게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아니, 기왕 이렇게 된 거요.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똑같지요?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똑같지요?

제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

한창민 의원 등 188인 발의)(의안번호 2209248)

7.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8.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9.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21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은 지난 4월 4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사위는 국회법 131조에 따라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130조는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1조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법사위에서 자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4월 16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지금……

나오나요?

○위원장 정청래 말씀하세요.

○조배숙 위원 저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이것을 일정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탄핵소추, 정말 계속 출탄핵입니다. 과거에는 법사위에 회부되거나 이런 절차 없이 대개 바로 본회의로 갔는데 왜 이 건은 바로 안 가고…… 저는 역풍을 우려했는지 법사위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4월 16일 날 행하고. 그러면서 저는 계속 탄핵에 관한 이것을 어떤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말 현재 결정문에서도 말을 했듯이 신중하게 위헌·위법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제도를 야당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법사위로서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이걸 한다는 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추안 상정이나 또 일정 논의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지금 보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증인 신청도 벌써 증인과 참고인으로 14명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바로 그날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본회의에 올리고 또 그것을 법사위로 보내서 청문회까지 연다는 것이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과 안보 문제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12월에 진작 대통령권한대행을 처음 맡았을 때 벌써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탄핵소추가 되는 바람에 지금 4월에 돼서야 통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또 탄핵에 이렇게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소추 사유를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유와 완전히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 이미 탄핵소추를 해서 기각이 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복귀가 됐는데,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는 실컷 탄핵소추를 해도 또다시 복귀될 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결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 명확한 상황이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지적된 것이 크게 보면 총 세 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 부분과 또 비상계엄을 국무회의로서 막지 못했다는, 비상계엄의 공범인 것처럼 그렇게 의율한 부분 또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 문구 중에 제 PPT 내용만 보시더라도 문구나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팩트가 있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현재에서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다 지난 일을…… 마은혁 후보는 어제 결국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임명을 안 했던 것인데 이 사유를 가지고, 경제부총리는 이미 권한대행도 아닌데 지금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이런 식으로 탄핵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도 생략하거나 간이하게 해서 빨리 본회의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탄핵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철회할 사안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 분이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 수장이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성장률이 4.5%였는데 윤석열 정부 올라오면서,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었는데 경제성장률이 1.4%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져서 0%대라고 합니다. 경제 다 망친 장본인이 누굽니까? 최상목입니다. 한덕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경제, 사회 다 망가뜨리고 거기에 경제 수장이었던 최상목과 한덕수가 경제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어요. 마은혁을 임명해야 하고 그런데 끝내 임명하지 않았어요. 끝내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가지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다른 일들만 줄줄이 해 가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사해 왔어요. 이렇다라면 경제부총리로서 아니, 권한대행으로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장 탄핵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계속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우리가 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국회가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자기 임무를 방기하면 안 되고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방법을 국회는 같이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 수장으로둬서도 안 되고, 그동안 헌법을 위반한 행동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회의를 해서 비상 예산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위헌하고 위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다 망가뜨린 이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탄핵 청문회를 하고 그걸 거치고 바로 본회의에서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상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사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 이 두 부분은 사실 중복되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없다고 이미 확인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부재할 때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중요한 두 달간 컨트롤타워를 없애고 대한민국이 대응을 못 하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서 다음 정권에 국정을 넘겨주도록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해 가지고 권한 정지를 시키면 그 혼란은 결국 국민들한테, 또 국가에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 한시라도 이 자리를 비워 두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에서 만일 이것이 탄핵이 돼서, 탄핵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시다. 보통 90일입니다. 또 헌법재판관이 변경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임명을 못 해요. 직무 정지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부총리 임명이 안 되면 새 정부에서 한 달, 두 달을 그냥 차관 체제로 운영할 겁니까?

○**서영교 위원** 왜 임명이 안 돼?

○**유상범 위원** 직무 정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대국적 견지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결국은 국정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 저는 무리한 탄핵소추는 이제 멈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기각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박범계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내 걱정할 건 아니지. 9 대 0 기각됐는데도 당당하신 분들인데 이거 1명 더 기각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여러분이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서영교 위원** 기각 안 돼요. 과연이에요.

○**이성윤 위원**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은 사실 소송으로 치면 본안소송인 것이고요, 내용들이. 지금은 사실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을 할 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회법 130조, 131조는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오면 법사위는 그것을 접수해서 수용해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신 내용들은 청문회 때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범계 위원** 2명이 했으니까 민주당 위원 한 분 정도는 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지체 없이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게 2명이나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절차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하셔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밖에 현안질의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기관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기계적인 겁니다, 사실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제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확실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47개 기관, 423건이고 4월 16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은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오늘 오후 5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이의는 들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없으신 걸로 하고……

○**유상범 위원** 있어요. 표결해요.

○**위원장 정청래** 있어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채택된 조사 계획서에 따라 2025년 4월 16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중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중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는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긴급현안질의

(11시40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지금이요?

○**유상범 위원** 예,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최근에도 한미훈련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 체포가 언론에 나왔고 고등학생이 공군기지를 촬영했는데 아버지가 공안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한데 지난번에 박범계 간사님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사실은 탄핵심판이 결정나고 나서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공청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계속 뒤로 미뤄서는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범계 간사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속하게 공청회를 잡아서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간사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는 어제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 여부 등을 질의하고 관련 기관장들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공수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오전 질의는 이성윤·송석준·장경태 위원까지 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50일도 안 되는 기간의 대행을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지명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지명은 윤석열, 국힘, 한덕수 등 반헌법 세력이 내란을 연장·비호하려는 헌법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용산을 비우지 않고 관저에서 계속 있으면서 베티면서 심야까지 파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대통령이나, 상왕이나 되는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부르자 거기에 찾아간 국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제 권한대행 타이틀을 악용해서 대통령 못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버린 한덕수 대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란 세력들이 합심해서 내란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힘이 정당해산심판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알 박기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신전속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가능한 권한이 있고 행사 못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기준을 판단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까, 국무총리로 인정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국무총리의 자격에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이성윤 위원** 맞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뜻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가 명백히 인정했지요.

또한 최근의 다수의 헌법학자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김선택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지명 권리가 권한대행에게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설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성명서를 보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뜻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는 대행으로서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그리고 윤파면 결정 이후에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또다시 위기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사무처장님,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윤 위원** 한덕수 권한대행 조차 아까 질의에서 많이 나왔지만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리 행사는 자체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했어요. 아시지요?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헌법을 위반하고 파면되었습니다. 한덕수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또다시 내란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뭔가?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이런 내란대행이 왜 그러느냐? 윤석열, 관저에 버티면서 국힘 의원들을 불러서 계속 지시하고 한덕수도 권한대행직을 악용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한덕수, 이 세 기관이 모두 내란의 한 세력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장님, 지금 이완규 후보자 수사하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성윤 위원** 찐윤 중의 찐윤입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에 사건 몇 개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당장 수사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석준 위원 김정원 처장님,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이유는 뭐니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는 거지요?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맞습니다.

○ 송석준 위원 헌법 수호를 위해서는 부당한 다른, 특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로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삼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로지 국민들의 권리, 기본권 보호를 하고 국가의 안녕질서 그리고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국가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잘 감시할 그런 의무가 있지요?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이번에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긴급, 마지막으로 써야 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대통령이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써야 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지금 지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행정사무 책임자로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답답하시겠지만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송석준 위원 오늘 제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에 9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의 1·2·3호 안건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 송석준 위원 헌법재판소법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민주당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내용들로 온통 구성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송석준 위원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추천한 분들은 당연히 임명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마흔여섯 재판관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은 입법부에서 추천을 했지만 입법부의 기본 관행에 따른 여야 합의가 안 됐을뿐더러,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분의 과거 행적을 보면 소위 혁명을 목표로 반헌법적 반체제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인민노련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인물이라는 거지요. 또 이분의 그동안의 판결 내용을 봐도 너무나 이념 편향적이고 이런 분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께서 이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탄핵까지 하자는 것 아닙니까, 탄핵까지.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의 안위를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 직위를 무책임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소위 출탄핵 심지어 총탄핵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입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합법을 가장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도 법사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미 권한대행에서 물러난 최상목 전 권한대행까지도 또 탄핵하겠다, 심지어 국무회의가 무너져도 좋다, 15명 무너져도 계속 탄핵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놓습니다.

김정원 처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납득이 갈 만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맡겨진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 바로 우리 입법부에서 입법 독재 소위 다수결 폭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모든 출탄핵에서부터 총탄핵까지 얘기하면서 입법 독주·폭주 이것은 더 이상 용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헌법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민들께 양심을 고백하셔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장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경태 위원**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이 지속되고 헌법 파괴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더니 아주 치욕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마저도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다, 정책 전환이나 대대적 인사 변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자 통설, 다수설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장경태 위원**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는, 소위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지금 작동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월 3일 날 대통령선거가 있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 김철수 교수님, 허영 교수님, 정재황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또 이부하 교수님까지 모든 헌법에서도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

행 스스로도…… 대국민 담화문 오전에 보셨습니까,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체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 또 권한대행자,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결국 고위공직자는 임명되거나 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률에 따라……

○장경태 위원 법률에 따라 당연히 돼야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별개의 지위가 아닌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탄핵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3분의 2라고 배웠고 대통령이든 국회든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탄핵할 때는 2분의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국민이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만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현재가 판시한 것이지요, 처장님?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김석우 장관대행님, 지금 장관대행 맞으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장경태 위원 인정 거치지 않으셨지요? 인사청문회 안 거치잖아요, 차관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장관직을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역할이신 거지 신분이 장관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국무위원을 승계받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의결권 행사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관도 아니고 인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할지라도 차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지 장관을 승계하거나 국무위원을 승계한 건 아니지요. 역할이 장관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장경태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이 법 있는 것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재판소법에 규정……

○장경태 위원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고문 또는 자문을 하신 분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3년 이내에.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윤석열 캠프 법률팀 이완규 현 법제처장의 여러 활동 기사들이 아주 적나라 합니다, ‘윤곽 드러나는 윤석열 캠프 사람들은 누구, 네거티브 대응 변호사들 총집결’.

이완규 법제처장님, 윤석열 법률캠프 페이스북 기억나십니까? 페이스북까지는 모르시겠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장경태 위원** 윤석열 징계처분 소송의 변호사 누구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징계 소송은 저하고 손경식 변호사, 이석웅 변호사 3명이서……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여기 법률캠프 입장문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라는 마지막 문구 이것은 담당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캠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 저는 이것은 이완규 법률 팀원이 자문과 고문 등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저희가 자문한 내용은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전 법사위원장님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전체화면으로 해 주시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이완규 처장을 ‘미스터 클린’이라고 표현했던 전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발언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한 사람을 지명한 예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정당 추천 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 색깔과 같은 사람을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금도를 지킨 겁니다. 내재적 한계를 지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보자에게는 그런 금도를 어긴 거예요’라고 과거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행사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대통령이 탄핵돼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정권의 정통성도 잊은……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서 승계받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은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참고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쳐장님,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도 그 의혹을 제기하셨고 페이스북에 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어느 매체의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가야 되니까요, 논란은 종식돼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하시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국회의 어떤 의원님께서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법제처에서 국민의힘 쪽에다가 요청해서 공문을, 제가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문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있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대통령께서 징계당하셨던 징계 소송 소송대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도 정치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캠프 네거티브 대응팀……

○위원장 정청래 아마 나무위키 이런 데서 그렇게 기록돼……

○법제처장 이완규 예, 인터넷에 나무위키라는 데에 그런 글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청래 나무위키가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은 잘못된 건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완규 쳐장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 개진이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팩트가 아닌 건 또 확인을 해서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아닌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예.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보도된 언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것은 이완규 쳐장님께서 또 책임지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당적 보유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수정해 드리는 데 협조해 드리는 겁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장동혁 위원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 학술적인 그리고 법리적인 다툼은 있습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현상 유지에 제한된다는 견해도 있고, 정종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권한 행사가 반드시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현상 유지일 수도 있고 현상 변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있습니다.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교과서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헌법기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든 그 구성원의 일부가 임기가 만료돼서 후임자를 임명하고 그래서 그 헌법기관이 계속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상 유지입니까, 현상 변경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바꿔서 물을게요.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원이 임기가 만료돼서 후임자를 임명하고 그 기관이 업무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현상 변경이라고 법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결국 해석 문제인데요. 그 해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이 있다면 그걸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을 하든 국회에서 선출하고 임명을 하든 헌법기관 구성원의 보충, 후임자의 임명으로 인한, 그래서 그 헌법기관이 업무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 행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장동혁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 걸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기관이 업무적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상 유지에 해당하든 현상 변경에 해당하든 그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그 기관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은, 그 권한은, 그 행위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 행위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대통령의 임명이 없다면 후임자가 임명될 수 없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없음은 자명한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습니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요. 헌법기관이 최종적으로 구성원이 충원돼서, 후임자가 임명이 돼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 행위가 마지막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누가 추천했든 누가 선출했든 누가 지명했든 그들과 상관없이 마지막 임명 행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헌법기관의 구성이 종결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뜻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행위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 마지막 임명에 의해서 헌법기관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의해서 지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사고와 결위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임명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지원 위원** 이완규 법제처장님.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제가 사퇴를 촉구하자 임명권자인 한덕수 대행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하셨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덕수 대행은요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결정을 받고 복귀했지요.

언제 헌법재판관 내정 통보,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구체적인 것은 정부 의사결정,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요.

○**박지원 위원** 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일단 통보를 받은 것은……

○**박지원 위원** 무슨 그게 뭐 국가 기밀입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저께입니다.

○**박지원 위원** 예? 언제 받았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통보받은 것은……

○**박지원 위원** 언제 받았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통보를 받은 것은 그저께 받았고요.

○**박지원 위원** 예?

○**법제처장 이완규**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발표되기 전날,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월요일.

○**박지원 위원** 아니, 전날이 언제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월요일, 그러니까 4월 7일이지요.

○**박지원 위원** 예?

○**법제처장 이완규** 4월 7일 날 받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4월 10일 날?

○**법제처장 이완규** 7일, 7일이요.

○**박지원 위원** 4월 7일 날 받았다 이거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이번 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보면요 3월 24일 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3월 25일 날 이완규 처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의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아, 그것은요 그게……

○**박지원 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박지원 위원**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고 그러니까 25일 날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뭐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답변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인데 그 대출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만기가 됐고. 그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제가 변호사 자격, 변호사로서 사업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대출을 받은 거였는데요, 제가 법제처장이 되면 사업자등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 처장.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5·18 유공자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5·18은 전두환 내란 쿠데타 주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의로운 학생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받았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런 분이…… 전두환의 내란과 윤석열의 내란은 어떻게 다릅니까? 윤석열 내란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로 규정을 하고 과면을 했어요.

또 법제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라 하고 인사권 돌려주라는 얘기도 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러한 일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대행이에요.

또 처장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했고 김건희 변호사도 했고 장모 최은순

여사 변호사도 했고, 소위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법제처장을 관두면 사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 존경을 받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는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지만 만장일치로 내란에 대한 수괴를 파면했습니다.

만약 처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저는 6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내란수괴 변호사도 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변호사도 하고 최은순 양평고속도로 변호사도 하면서 한편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피내사자가, 피의자가, 내란 동조자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말씀을 하면 사양을 했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처장이 일생 동안 있었던 법조계의 권위를 위해서도 스스로 사퇴를 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윤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징계사건만 변호했을 뿐이고요, 장모님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쪽은 제가 변호한 사건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8 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은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그건 파면되는 대로 해서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저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의거해서 재판한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 최측근 윤석열의 반란에 대한 책임을 처장께서도 지고 헌법재판관을 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처장님, 현재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게 승복한다 이런 뜻입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헌법재판소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승복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완규 처장은 승복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미루어 짐작 가는 것도 없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건 적절치 않은 질문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궁금해서.

○유상범 위원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되지.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배숙 위원 저는 매우 안타깝지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어서 대립이 심했고 현재의 심판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자양분 삼아서 신뢰받는 정당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국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원문을 인용하면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출탄핵에 대해서 더 한층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법 폭거,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과정 결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도 현재의 이러한 지적을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조배숙 위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후보 지명한 것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과연 권한대행이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은 단순한 대통령 사고가 아니라 궐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의 경우에는 임시적인 그런 직무수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궐위이기 때문에, 궐위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본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권한대행이니까 그냥 임시적인 것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국군통수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궐위니까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의 사례가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이던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는데도 후임자 지명 안 했고 탄핵 인용 이후에 궐위 상태에서 비로소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 분이 질문을 했는데 처장님께서 계속 본질적인 답변을 하시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완규 처장님.

○법제처장 이완규 예.

○조배숙 위원 제가 과거 이력을 좀 보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전고검인가 거기서 바로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 가지고 사표 내셨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5·18 유공자시더라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당시는 학생이셨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예,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때 어떤 이유로 구속이 되셨나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때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되고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제 고향이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5·18 관련된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 배포나 또는 벽보나 이런 것을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구금 생활을 좀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얼마 하셨나요?

○법제처장 이완규 한 40여 일 남짓 구금됐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집행유예 받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법제처장 이완규 일단 구속됐다가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조배숙 위원 구속된 전력, 그래서 5·18 유공자가 되셨나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뒤늦게 5·18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유공자 신청은 했습니다만 제가 한 행위에 비해서 좀 과분하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저는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주진우 위원 한덕수 권한대행, 즉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떤 부분까지 행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업무 범위에 명시된 규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헌법 이론에 남겨져 있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아까 사무처장께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첨예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현재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아까 그 개정안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즉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충분히 재판관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현재가 일반 국민들을 위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법에 의해서 현재 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헌법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임기가 6년으로 명시돼 있는데 어떤 재판관은 6년 6개월을 근무하고 어떤 재판관은 6년 만에 그만둔다라고 하면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규정 때문에 법을 연장해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려서 공백을 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백을 메꾸자는 것은 원래 민주당이 주장해 오던 바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주장에 따라서 이런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 법안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이 더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대행이 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통상·안보, 특히 관세 분야에 대한 논의를 했고 본격 협상에 착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소추하지 않았다면 12월에 진작에 시작했을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핵 남발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시급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도 안 됩니까?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국과의 협상이야말로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국익이 지켜지기도 하고 국익이 훼손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현상 유지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익을 조속히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 상황이 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권한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현재가 재판관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들을 조속히 지명해서 현재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헌정 사상 7명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지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부분보다 더

현상 유지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상 문제도 없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벌써부터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저는 국민들께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지금 어떤 권한이 침해돼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국회의 어떤 권한이 침해되는 것이지요? 국회가 지금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미래의 권한이 침해된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 침해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쟁송보다는 현재를 빨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질의할 때 보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계신 분이 없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더구나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지금 위중한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차기 대선을 잘 치러서 후임 대통령에게 잘 인수인계하는 그런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월권행위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또 나라를 다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희승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많이 다그쳤는데 제가 다그쳐서 아마 현재 판결이 빨라진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숙의를 거쳐서 8 대 0 만장일치로 현재 결정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최근에도 엊그제부터 윤중로에도 벚꽃이 피어서 많은 시민들이 벚꽃 구경을 오는데 현재가 그런 중대한 파면 결정을 해 줘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전의 법안 관련해서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직무 연장하는 나라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것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독일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법에 직무수행 연장, 프랑스도 헌법재판소법에 직무수행 연장, 라트비아도 직무수행 연장, 슬로베니아는 헌법에 후임자 임명될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하고 있고, 스페인도 헌법재판소법에 직무수행 연장, 포르투갈도 헌법재판소법에 직무수행 연장, 대부분의 헌법재판소를 가진 나라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직무수행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헌법에.

더구나 오스트리아·터키·볼리비아·과테말라·쿠웨이트에는 예비재판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정규 재판관이 부재할 때 예비재판관이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미국·영국·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제도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뒤늦게 발의해서 제정한다 그래서 크게 각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상례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명 권한이 넘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시, 민법 총칙을 쳐장님도 공부하셨겠지만 직무대행자는 통상의 행위에 한한다 이런 게 민법 총칙에 규정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민법 그런……

○**박희승 위원** 예, 법인 편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희승 위원** 통상 우리가 법 해석을 할 때 모든 다른 법에도 그러한 민법 총칙의 규정들이 해석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우리 민법 1조에 법률, 관습법, 조리에 의해서 법 해석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총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 내지는 통상의 업무에 한한다는 것은 아마 법을 전공하신 분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적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만약에 권한대행에 의해서 위헌적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결국은 위헌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재판받게 되므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헌법소원을 냈거나, 당사자가 권한이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일반 사건으로서 지금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 지난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탄핵 결정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 위원님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탄핵 결정을 미루고 있느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을사오적에 빗대 가지고 을사 몇 적이니 하는 그런 아주 모욕적이고 또 위협적인 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 나고 나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아주 이렇게, 다 훌륭한 결정 했다 이렇게 띄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좀 늦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을사 몇 적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재판관 개인에 대한 그런 발언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럼요, 적절하지 않지요. 그런 헌법재판관에 대한 태도가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어렵고 불리할 때는 올사 몇 적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이완용 운운하면서 모욕적이고 또 위협적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도가 넘는 공직자 비난 이런 것은 스스로 자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현상 유지적인 행위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통령이 잠시 아프거나 또는 탄핵소추 되어서 직무 정지가 됐거나, 그런 직무 정지 상태에 있을 때의 권한대행의 권한과 권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직무대행의 권한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지요. 권위가 된 상태에서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해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권위되어 있는 동안에 국가에 어떤 사태가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이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령해 가지고 제도를 바꾼다거나 이럴 때는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임기가 4월 18일 되면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것 맞춰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을 위해서 2명을 지명하는 것 그것이 현상 유지지요, 현상 유지설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현상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국가 헌법기관에 대해서 그 권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후임 헌법재판관의 지명 그것은 대통령이 권위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마땅히 해야 될 권한의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이런 법까지—오늘 오전에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늘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입법이라든지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계속해서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앞으로 헌정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향후에도 대통령이 권위된 상태에서는 직무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제한 없이 행사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동토에서 봄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난도질해 가며 수백 번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으로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대통령후보였을 때 권한까지 박탈해서 아주 짓밟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허위였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이것은 국민이 저항해 주셨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에 그런 국가의 긴급발동령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다행 아닙니까?

법제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왜 불법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검찰을 이용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 놓고 왜 불법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인이 포토 라인에 서는 것을 막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막으려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이러니 헌법재판소가 8 대 0으로, 아니, 40 대 0으로 파면시킨 겁니다.

법제처장이 살아온 삶에 비추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언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얘기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게 참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서영교 위원 후회스러우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러는지. 우리는 여와 야가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만장일치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랐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고 현재를 가루를 내 버리겠다고 했던 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법제처장은 그 이야기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도 물었지만,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지금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뜻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학설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확인하기로는 가처분신청이 현재 접수되어서 재판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나 상식적으로요, 대통령이 없어요. 그것도 파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밖에 안 남았어요. 잘 준비하는 게 맞지 그 사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가처분, 권한쟁의 이런 것 다 빼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인간의 도리로요, 안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마은혁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던 자가,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시켰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없는 데 대통령 봇을 임명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습니까? 그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있는 8명의 재판관에게 물으면 전부 다 ‘안 돼’라고 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분신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더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날 끝나요.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끝나면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 주는 겁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는 일, 그동안 우리가 불비한 게 맞지 않습니까?

박희승 위원님 말씀처럼 독일·오스트리아,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을 빌려 온 나라 전부다 그렇게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합니다, 임기가 끝나도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맞지 않습니까? 딱 독일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스트리아 두 나라에 맞춰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그 나라 입법례에 따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답을 해 주셔요. 금방 독일·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해서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 있던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것 계속하는 걸로 독일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독일 헌법재판소법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독일 기본법.

○**서영교 위원** 독일 기본법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등등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되어 있고 독일은 기본법에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금 만든 법이 아니라 벌써 1월, 2월에 만들어진 법이고 2016년에 이 법은 박용진 의원, 소병훈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제대로 보충해 내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그 법을 빨리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 하는 것이 법조인

으로서 헌법재판소 관계자로서 하는 일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위원 이완규 법제처장님!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은정 위원 여기 오기 전에 의원회관에서 나오시던데 거기 왜 가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거기에 우리 파견.....

○박은정 위원 누구 만나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만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박은정 위원 거기에 왜 의원들 있는데..... 친윤 의원들하고 아직도 잘 지내세요?

처장님 행정부 법제사무 통할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윤석열.....

화면 올려 주세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안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파면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전부 동의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박은정 위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현실이 규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건.....

○박은정 위원 동의 안 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당연히 승복하고 그결정체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정 위원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 최상목 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법제처장 이완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헌법재판소의 취지.....

○박은정 위원 그러면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임명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지요.

○**박은정 위원** 무슨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언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 상당한 기간입니까? 임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보좌도 못 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40년 친구 윤석열의 정계 소송의 대리인으로 해 준 보은으로 법제처장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본인이 보좌하셨는데 저렇게 내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은 책임 없으시다고 생각하나요?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박은정 위원** 제대로 보좌하지……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 잠깐만요. 저도 충분히……

○**박은정 위원** 아니, 제 질문의 취지를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취지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취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답변을 하시라고요. 취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데 위원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모욕감을 주는……

○**박은정 위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법제처장?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

○**박은정 위원**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고사할 생각 없습니까? 본인 후보자도 아닙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박은정 위원** 고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친구,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고 헌법재판관 고사하고 법제처장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3개월 전에 그렇게 말해 놓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재판관 임명은 또 3개월 전에 안 한 이유를 그렇게 말해 놓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 하면 문신이라도 새기세요. 멘토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기억 못 하면 문신 새기는 걸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 내로남불 발언, 재판관 지명,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기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궐위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박은정 위원** 한덕수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그래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제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

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행위 일으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올 생각을 합니까? 욕심이 과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고사하세요.

○송석준 위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유상범 위원 답변을 들을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누구한테 질의했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우리 이완규 처장한테 계속 질문만 하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잖아.

○송석준 위원 답변 기회를 좀 드리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완규 처장님, 1분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잘 새겨듣겠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의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그런 것을 쭉 드시면서 좀 너무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좀…… 그것을 가지고 질문은 좀 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 위원 무슨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에?

○법제처장 이완규 물론 제가 윤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박은정 위원 법제처장으로서 보좌하셨잖아요, 법제처장으로서. 제가 언제 개인적인 질문 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책임지고 본인이 사퇴하고 고사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됐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내란을. 법제처장으로서 책임 없습니까? 마흔혁 재판관 임명 왜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위헌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직무유기의 공범이에요. 직무유기의 공범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옵니까?

○송석준 위원 질문 시간 좀……

○박은정 위원 수사나 받으세요, 수사나.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완규 처장님, 기왕에 이렇게 박은정 위원 질의 과정에서 본인 신변에 관한 것도 나

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사 보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 신분이다……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저는 절대 그건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건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요.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저는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피의자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어떤 단체 또는 제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는, 아마 공수처에다가 고발된 건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 가지고 그 사람을 수사받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발된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 정청래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기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은정 위원 휴대폰은 왜 바꿨어요, 그러면?

○유상범 위원 가정적인 질문을, 그렇게 답하면 어떡해요.

○박은정 위원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 휴대폰 왜 바꿨어요?

○서영교 위원 휴대폰은 왜 바꿨어요?

○박은정 위원 가족은 출국 왜 시킵니까?

○곽규택 위원 도대체 몇 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서영교 위원 안가 회동은 왜 했어요?

○박은정 위원 안가 회동은 왜 했어요?

○위원장 정청래 다른 위원님들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그래서 저는 피의자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 신분도 적절하지 않지만 기소가 됐을 경우는 이것 심각한 것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어떻든 저는 그것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기소가 된다면?

○법제처장 이완규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가정적인 것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지요.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또 답을 만들어 내고, 적절치 않잖아요.

○서영교 위원 욕심이 과하지요.

○송석준 위원 뭐 또 가정을 해서 답을 하래.

○유상범 위원 여기 다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분 대선후보로 하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해.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란으로 연루된 거예요.

○유상범 위원 누가 내란이에요, 내란?

○서영교 위원 그걸 구분해야지.

○유상범 위원 누가 내란했어?

○곽규택 위원 여기도 피의자 많잖아요, 지금.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연루된 거예요.

○곽규택 위원 피의자가 수두룩한데 무슨.

○서영교 위원 여러분도 과하다고 느끼잖아요.

○곽규택 위원 아니요.

○서영교 위원 한덕수가 임명하는 게 맞아요?

○곽규택 위원 맞지.

○유상범 위원 예.

○서영교 위원 그게 맞아?

○곽규택 위원 누가 임명해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대통령 때도 맞다며?

○유상범 위원 그러면 누가 임명해?

○곽규택 위원 4월 18일 날 임기 끝나는데 누가 임명해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임명하지 않아야지요. 임명하지 않아야지.

○곽규택 위원 왜요?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님, 발언 시간 얻고 하세요, 발언 시간.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지.

○곽규택 위원 왜 임명하면 안 돼요? 임명해야지.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의 제자에 따르지 않으므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유상범 위원 다 했어요, 이제.

○곽규택 위원 할 것도 없어요.

○박범계 위원 우리는 서영교 위원님 1명이면 충분해요.

○위원장 정청래 이제 그만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이제 진행합시다. 재판장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상정돼서 처리가 됐는데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 그다음에 ‘헌법에 이것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질문도 있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지명 뒷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법조인의 상식으로서 대통령 지명 뒷은 실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행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오늘 다른 당의 법조인 출신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도 설마 내심으로도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 놀이라든지 민주당이 국민을 뭐뭐뭐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은 참 듣기 민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법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법전이 거의 산 높이만큼 쌓이게 생겼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니까 모든 법에 이렇게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를 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통과된 법도 그런 취지지요.

오늘 법무부차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헌법재판관을 총리가 지명할 때 혹시 한덕수 총리가 의논을 하던가요? 법무부차관이면 정부의 법률 보조 논의를 하는 분이니까요. 어떻던가요? 논의 안 했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셨고 사전에 저희가 건의를 한다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의견을 냈습니까? 의견을 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의견을 내는 사항은 아니었고 발표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경위로 하게 됐다라고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 2024년 12월 26일 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체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또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체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제 갑자기 대통령 뜻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 의견도 안 듣던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궐위와 사고의 차이점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총 9명 임명할 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 뜻은 국가원수 자격에서 임명하는 반면에 이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3명을 지명한 것은 행정부 수반의 자격으로서 한 부분이라서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도.....

○김기표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거는 진짜 차관님의 독자적인 학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도 자꾸 궐위와 승계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법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국무총리는 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만. 그런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 잠시 기간만 과도하게 대행체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가는 거고 미국처럼 정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통령까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부통령이 승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통령은 대통령하고 같이 뽑히는 권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고, 파면이 돼서 대행만 하고 정부를 과도적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만 하는 총리는 당연히 관리업무만 하는 거지요.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것은 궐위와 사고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표 위원 오히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파면된 상태에서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게 권한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다만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 못 합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고 시에 나타난 부분인데 궐위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궐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준태 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심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7인 이상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바라는 바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것은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준태 위원 다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재판소의 구성원 모두가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 부분은 헌법에 정한 대로 운영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만약에 어제 한덕수 대행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서 장기 불능상태로 빠지게 됐을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을 보지요. 이게 12월 경에 공식 회의에서 하신 말씀인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서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장이요.

이게 지금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여기 주문을 보시면 ‘대행체제라는 현정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을 통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라 할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고 9인 체제 완성을 위해서 후임 재판관 지명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셔야 될 일은요 헌법재판관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장에서 이분들의 자격이 충분한지 따져 보고 검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요 마은혁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석해 가지고요 이분 전향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국가관 또 사회관이 전전한지 이 문제 제대로 한번 따져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지금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시는데요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거기서 검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법을 바꿔 가지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늘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재판관들 계속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 주장을 하실 때는요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 정족수 부족으로 늦어질까봐 임기를 더 연장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당위성이라도 저는 있다고 생각, 그런 취지에서 주장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재판관들을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붙잡아 두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것을 전제로 지금 지명을 미루라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요 이거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고 오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무처장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통과시킨 법,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임기 연장하는 거요 그 대상자가 퇴임하는 재판관 두 분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 달라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을 좀 나눠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분들 임무 수행 잘 마치고 이제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건의를 드려서라도, 지금 현재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통해서라도 그분들 임기 끝났으면 떠나겠다 그런 메시지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아까도 설명을 주셨는데 조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요,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한 임명과 관련돼서 제가 특별하게 조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갖고 충분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좀 사정이 변경이 된 것이 일단은 궐위 상태로 변경됐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궐위 상태라고 하면 이미

탄핵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 일 경우에는 직무 복귀했을 때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이 이미 났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 총 9명을 임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게 4공화국 때 처음 유사한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개정하면서, 그런데 헌법위원회 체제였는데 9명을 다 자기가 임명한다. 그런데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대통령 임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도 대법원장 지명 3명과 국회 선출 3명에 대해서는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다들 해석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임명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지위 때문에 그렇다라고 당시에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9명을 형식적으로 임명합니다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의 어떤 고도의 지위에서 비록 실권은 없지만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체제에서 과연 그런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을 비록 실권이 없다 하더라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3분의 1씩 임명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한다고 보통 학계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원수 자격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수반 자격을 대행하는 입장이라면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궐위라고 하는 상황 변경이 생긴 점, 두 번째는 그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두 가지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마흔여덟 재판관 임명 부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아주 명쾌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석우 차관님, 지금 말씀 중에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장관대행님 있잖아요 오른팔, 왼팔이 다른 사람 거예요? 오른팔, 왼팔이 김석우 한 사람 거잖아요.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국가원수의 지위도 있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도 있고 국군통수권자의 지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마치 행정부 수반만 지금 대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이때는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는 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그런 지위를 다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다 파면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국가원수 따로 행정부 수반 따로 국군통수권자 따로…… 대통령이 따로 국밥입니까?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무책임하게.

○유상범 위원 있어요. 학계에서 그렇게 나눕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거 나눠요. 보세요.

○**위원장 정철래** 제가 좀 이따 제 질의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소극적 현상 유지 의무만 해라 이런 거예요. 김석우 차관도 법조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현 정부, 이제 현 정부도 아니겠군요. 과거 윤석열 정권의 탓이기는 하겠지만 왜 자꾸 좀 더 이상해지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계속 이상했어.

○**박균택 위원**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법제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연락 언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받았고요 어떤 경위로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는 우리 정부 내부적인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인사검증동의서는 언제 내셨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월요일 날 냈습니다.

○**박균택 위원** 월요일 날 냈는데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를 만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절차적인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월요일 날……

○**박균택 위원** 이를 만에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것은 뭐 거의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를 사이에 이런 일이…… 그러면 월요일 날 인사검증 동의받고 화요일 날 발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오늘을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참 놀라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그 소문을 이렇게 사실로 확인시켜 준 한덕수 총리, 뭘 아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중간에는 아마 민정수석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제 추측이 틀렸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박균택 위원** 통보는 민정수석실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없어져 버린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런 유훈통치를 하고 윤석열의 그림자를 질게 드리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공수처에 수사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경찰에서 조사는 받았고요. 그런데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아직 안 받았고요.

○**박균택 위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을 교체했던 사실 있으셨지 않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경찰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알려지던데 그게 맞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경찰 조사받을 때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머지는 다 진술 거부한 적은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2월 4일 날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하신 적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 적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도 그 소신이 마찬가지입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내용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3월 4일 날 국무회의 전에 비공개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다, 일정 시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조언한 사실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은 한 적 없고요. 따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따라야 하는데 다만 의무 이행에 대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내에 그것을 판단해서 따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

○**박균택 위원** 아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법제처장 이완규**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헌법의 해석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박균택 위원** 그것은 양심과 논리를 갖춘 분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인 것은 맞는데요.

○**박균택 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계속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덕수 씨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 자리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단을 하신 것, 결정을 하신 것이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균택 위원** 그동안에 보여 왔던 언행이라든가 태도를 보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처장님의 태도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양심상으로라도 응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태를 취했던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분이었습니까? 왜 도대체 윤석열 정권하고 가까워지면 다들 사람이 이상해집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차관님, 아까 한덕수 총리가 후임 재판관 지명한 것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 대행으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지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범계 위원** 차관은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박범계 위원** 법과대학 나왔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PPT 되나요?

성낙인 교수님이 법대 교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서울대학교 총장 하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PPT 안 돼요?

(영상자료를 보면)

성낙인 교수의, 총장의 헌법개론입니다, 은사 선생님.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권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성낙인 교수 책에 있는 것 저도 확인했습니다. 했고……

○**박범계 위원** 됐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른 교수 책에도 비슷한 취지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잘 배워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역시 감정이입을 해요. 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감정이입을 하더니 오늘은 한덕수 총리에 감정이입을 하고, 총장도 됐다가 총리도 됐다가, 객관성을 좀 유지해 봐요.

이완규 법제처장님,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아니라고 보고 나는 법제처장으로서 묻습니다. 객관적으로 양심에 따라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소위 민주적 정당성은 제로가 됐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파면됐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PPT 한번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결정문입니다.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현재 결정문에 ‘해당 공권력 주체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고 이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저 앞의 내용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도 되지 않는다. 국무총리는 그냥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은 3분의 2이고 총리는 2분의 1이면 된다고 했어요.

국가원수도 아니고 행정 수반, 지금 평시도 아니고 내란 직후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도 있었어요. 권한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두가 다 반드시 그러하느냐, 반드시 재량이 따르는 권한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인에 대한 지명이, 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데 나중에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알 수 없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알 수 없지요. 후임 대통령이 와 가지고, 지금 5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것도 못 기다려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냅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명을 했다, 그것은 현재를 완전하게 구성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봐요. 왜? 현재를 구성해 달라는 마은혁 재판관 등등 3명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질질 끌고 거꾸로 파면이 되니까 마은혁은 슬쩍 걸쳐 놨지만 정작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지명을 지금 강행한 거예요. 정치적 의도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후임 대통령이 이것은 원천 무효다, 현재가 결정을 안 한다면, 그 전에 결정해주면 모르겠으나 원천 무효다 그게 가지고 취소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유독 단 한 사람의 자의적인 권한의 판단……

지금 이 후보의 자리를 누릴 게 아니에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평생을 살아왔던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공의로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후보 자격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움, 내란 직후에 국민이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 난데없는 날벼락을 일으킨 반헌법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의 느닷없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겸양스럽게 ‘나는 그 후보의 자격을 누릴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그분과 함께 내 정치적 명운, 공법적 명운을 함께합니다’라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님,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탄핵 결정했다. 왜 시간까지, 분까지 다 발표를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심판 때부터 결정문에……

○유상범 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 시간부로 바로 대통령이 궐위가 되고 그에 따라서 국

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시간을 지정한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특정하기 위해서……

○**유상범 위원** 즉 헌정질서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후에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유상범 위원** 됐잖아요, 이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대행에게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조약체결권 및 외교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대통령권한대행자에게 다……

○**유상범 위원** 재의요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유상범 위원** 맞습니다. 헌법기관 구성권도 대행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대행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으로 사고가 돼서 언제든지 복귀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권한 행사는 자제되어야지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행의 뜻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현상 유지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이 되고 궐위가 되는 순간부터 결국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만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기관 구성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는데 국군통수권은 행사할 수 있다 또 조약체결권은 가능하다 이런 자기 편의에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와 궐위에 대해서 많은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영성 교수는 ‘사고는 잠정적, 현상 유지적 권한만 가능하나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국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정종섭 교수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정책 결정과 인사권 행사 등 모든 국정 공백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허영 교수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권한 행사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

즉 사고와 궐위에서는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나 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궐위라면 당연히 대행의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헌법학자들의 얘기고 사무처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각종 권한, 조약체결권·외교권·국군통수권을 대행이 가지고 있다면 그 논리적 귀결성으로 헌법기관 구성권도 당연히 대행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헌법 84조 해석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상범 위원** 지금 이재명 대표가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 모두 대통령 재임 중 사건

아니고 이미 다 기소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재판 중단돼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급심에서뿐 아니라 대법원에도 사건이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헌법학자들 견해 PPT 있으면 잠깐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보시면 말이지요, 지금 헌법학자 중에 허영 교수나 장영수 교수, 임지봉 교수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재판 진행에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재판 중단을 주장했던 한상희 교수도 작년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3월 언론에는 원심 법원의 법리만을 판단하는 대법원 재판은 협용될 수 있다라고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즉 적어도 지금 재판 중단을 주장하는 그룹 쪽에서도 일부가 대법원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고 할 정도로 결국 국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한국갤럽이 조사할 때도 국민의 73%는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에서도 71%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라도에도 61%가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58%가 재판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국민적 여론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현재의 이번 윤석열 파면 결정 선고문을 저는 정독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것 읽으면서 재판관들께서 헌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헌법 문구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상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피청구인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나, 그래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났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소극적 군인들과 시민들 덕분이지 윤석열의 공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덕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을 놓고 유린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휘둘렸던 사례를 이승만 때부터 죽 씁니다. 발췌개헌, 유신헌법 그러면서 ‘부마항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선고문에. 그리고 전두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지금 비

상계엄과 군사반란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런 관점에서 파면한다 이런 매우 훌륭한 것도 있고.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예산 문제, 국회의 이런 전횡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는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때였다. 2025년 예산은 미리,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예산을 깎았다 그러는데 여야 합의로 깎은 것도 계재를 해놨습니다. 왜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냐 했고.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것 안 되게 됐다 하는데 법사위 1소위에서 다 합의를 했다,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를 다 써 놨어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을 하나하나 통렬하게 반박을 했고.

그리고 제가 참 무릎을 췄던 부분 중의 하나는 포고령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우리 그것 집행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꼼꼼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간통행금지를 뺐다 그러는데 그것 왜 뺐습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예리하게 다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은 전 국민이 한번 읽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장님—헌법재판소니까요—헌법 37조, 제가 헌법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다 옳고 조항이 좋지만 이 내용은 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7조 1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일일이 글자로 문자로 다 적지 않았다 하여 국민의 자연권이, 기본권이 경시돼서는 안 된다. 너무나 좋은 헌법 조항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에서 열거하지 않았다 하여 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 똑같다거나 권한대행도 똑같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법조인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놨는데 고매하신 법률·헌법학자들이 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성낙인 교수, 서울대 총장 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권한대행의 본질에 비추어 최소한의 소극적인 책임과 관리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다’라고 이렇게 해 놨고요. 김철수 교수는 ‘권한대행은 다만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이나 인사의 이동 등과 같은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장영수 교수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의 범위를 대통령의 권한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다 써 놨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윤석열 파면 선고를 헌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판결을 한 것처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서는 안 된다, 권한 밖이다 이렇게 여러 헌법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런 헌법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도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가처분 사건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번에 저희들 모두가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처럼 현재 결정을 통해서 바른 결정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일 뿐입니다. 혼돈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손 다시 한번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것 그 자체로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40년 친구 그리고 법률 집사 이완규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해 준 것 그 자체가 공신으로 인정하고 그 직을 하사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완규는 법제처장으로 취임했어도 국민을 위한 법 해석이 아니고 정말 철저히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 정권을 위한 부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자 거부권 행사를 두둔해 주고 또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정말 무도한 시행령 통치를 가지고 두둔해 줬어요.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입니다.

처장님, 인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 있었는데 판단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서 6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결정을 쏟아 낸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대한민국에 이런 재판관이 있었습니까? 지명되자마자 이렇게 국민들이 재앙으로 생각하고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국민들은 지난주에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써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는데 월요일 날 이완규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국민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거리에 나오게 생겼습니다. 다시 내란이 진행 중이다, 내란을 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이완규 후보자가 저하고 동기이지 않습니까. 저하고 검사 생활 오랫동안 같이했지요? 그때는 정의로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완규 후보자가 임명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만에 하나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6년 내내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시비를 받을 거라고 봐요. 정말 본인이 명예를 중요시한다면, 정말 검찰에 있을 때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것은 맞지도 않고 6년 동안 내내 본인 판결,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비를 걸 거고 그럴 건데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은 아까부터 계속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윤 위원** 본인 사퇴가 바로 헌정질서 회복이고 또 만약에 한덕수가 이걸 임명한다면 저는 탄핵돼서 파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헌법재판소 처장님, 헌법 제111조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송석준 위원** 분명히 대통령이 바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든 대법원이 추천하든 또는 행정부 뜻이든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궐위가 되면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게 이건 기본 도리고 헌법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대행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판결이 끝나서 대통령이 완벽한 궐위 상태 아닙니까, 불확실한 소추 상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유사시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면 왜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참, 이렇게……

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누군가는 지켜야 됩니다. 왜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막아 내야지요,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정한 의무, 책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의 일부, 결원을 채우는 걸 갖고서…… 무슨 이게 엄청난 형성적·적극적 행위입니까? 결원이 되면 법이 정하는 자격요건 따지고 또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면 되잖아요.

오늘 여기 추천된 함상훈·이완규, 두 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잖아요. 지금 법제처장이시고 전직 법관들입니다. 이분들은 법적 소양과 도덕적 이런 모든 자격요건을 갖춰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이 법조계에서는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로 빨리 결원을 채워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정상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흔혁 재판관,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봤어요. 문제 있지요. 과거에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태로 헌법재판관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 있는 인사를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했는데 그래도 한덕수 대행 참 어떻게 그분을 또 임명하셨네요, 저는 좀 못마땅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두 분과 께서, 하도 야당에서 요구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하니까 따라 주셨겠지요.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꼭 민주당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입니까? 여러분들은 소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 내정 남적(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지금 이재명 대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적폐 청산 시즌2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지요. 6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아직…… 민주당의 또 거대 야당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 누적된 출탄핵, 입법 폭주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정리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이제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임명돼서 결원이 없고 제대로 된 헌법기관이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승 위원 내란은 국민의힘 쪽에서 일으켜 놓고 왜 우리한테 심판을 받으라 그래.

○위원장대리 박범계 잠깐만요, 박희승 위원.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조건을 달았지만 송석준 위원님이 비상계엄 운운한 것은 매우 큰 유감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법무부장관대행님, 지금 현재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성립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재 상황요?

○장경태 위원 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재 상황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갑자기 송석준 위원님께서 비상계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주무 부처 장관으로 말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송 위원님 취지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법적인 제한이 없다 그러면……

○장경태 위원 빨리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선포를 빨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또 감정이입을 하시네.

○장경태 위원 모르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대표 출마 선언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통상적인 업무가 인사검증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통상적 업무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님, 월요일 날 지명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몇 시 정도에 연락을 받았습니까, 시간은?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오전쯤에 인사검증 관련된 연락을 받고 검증 동의 문서를……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지명 연락받고 검증동의서는 제출하셨는데 연락……

○**법제처장 이완규** 검증동의서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어쨌든 검증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명 연락을 언제쯤…… 통보를 하잖아요, 추천하고자 한다. 연락을 받으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 제출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러니까……

○**장경태 위원** 연락받자마자 바로 준비해 놨다가 바로 제출하신 건 아니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러니까 동의서 여러 가지, 검증동의서만 먼저 보내는 거니까요.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지명 연락을 처음에 받으셨고 그다음에 검증동의서 제출 시각이 있으실 텐데 언제쯤이시냐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검증동의서를 아마 월요일 날 오후쯤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오후쯤 제출하시고, 오후 한 3~4시경이라고 봐도 될까요?

○**법제처장 이완규** 정확히는 제가……

○**장경태 위원** 지명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검증동의서를……

○**장경태 위원** 지명을 할 테니 검증동의서 제출해 달라는 연락, 최초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되실 거다라는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3분 다 쓰고 있네요.

○**법제처장 이완규** 검증 동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도 지명될 가능성 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날 오전에 받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오전에 받으시고 나서 동의서를 오후 3시 이후, 3~4시경 정도 내셨다면, 후보자로 발표 시점이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24시간도 안 돼서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되신 겁니다, 동의서 제출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그리면 3시에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오후잖아요? 오전에 지명 연락받으셨고 오후에 동의서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접수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검증.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접수 시각이요. 세부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접수 송달 형식만 말씀드린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송달,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위원회 결의, 의결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업무하고 있는 인사검증에 대

해서 접수 시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렇게 위원회 의결을 요청하시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경태 위원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 내정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내정자가 지명 연락을 받은 시각도 불분명하고요. 오전이라고 방금 답변하셨고 또 동의서를 오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의서가 제출된 시각으로부터 언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접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접수받고 나서 인사검증에 관한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제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어떤 범법 사유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으나 접수 시각과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출된 시각, 시각이라도 알아야 어떻게 8일 화요일 날 국무회의 10시에 발표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법사위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이 문서 접수의 시각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저도 인사검증을 받아 봤는데, 하루 만에 형식적 인사검증에 필요 한 그 항목들 다 답을 해서 제출했다는 취지입니까?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리고 제가 이미 법제처로 올 때……

○위원장대리 박범계 아니, 어떻든 그때 검증을 받았다 치더라도, 법제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어쨌든 검증 서류는 그때 이미 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박범계 어찌 되었든……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대리 박범계 취지는 하루 만에 그 많은 항목의, 인사검증의 기본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답을 다 했다는 취지인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래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위원장대리 박범계 저는 유경험자로서 납득이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그 부분,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의 시각?

○장경태 위원 예, 아마 인사정보관리단에 접수 시각과 정리가 끝나고 나서 발송 시각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접수와 발송 시각에 대해서 3분의 1 위원님들 연서에 의해서 요청하시면 위원회 의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전화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김석우 차관님, 지금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면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검증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 인사검증을 한다면서 무슨 말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 시스템 자체가 인사검증 업무를 했을 때 누구누구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장관 직속이기는 해도 제가 장관대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장관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기본적으로는 일단 모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자체도. 역대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알 수가 없는……

○**박희승 위원** 이러한 현재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 총리실에 보고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인사정보관리단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기는 한데 이 지명 과정에 대해서……

○**박희승 위원** 오늘 질문에 나왔으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담당 장관이면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그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 지금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무부 인사검증 없이 독단적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지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 오늘 당사자가 여기 계신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박희승 위원** 그것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건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결정문 잘 읽어 봤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여당이 어디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여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인 문제가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김 차관님 이야기 들어 보면 말씀하시는 게 마치 국민의힘 쪽 편드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아요.

지금 사실은 정당성을 받는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국회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여야 다 같이 과거에, 현재는 여당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중요한 인사 문제에서는 다 협의

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구나 인사검증관리단을 본인이 관장한다면서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장관 직속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역대 한동훈 장관 때부터 인사검증 업무를 하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오늘 이런 질의가 나간다고 이미 법무부에 질문서까지 보냈어요. 도대체 지금 업무를 제대로 보시는 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러니까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박희승 위원** 우리가 질문서를 줬으니까 답변하려 나오셨어야지요.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뭔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편든다는 소리나 듣지요, 법무부장관이 돼 가지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업무 관련돼서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구체적인 게 아니고 시간만 알려 달라고요.

○**박균택 위원** 인사검증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구체적인 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접수 시작하고 송달 시간만 알려 달라는데 무슨……

○**박은정 위원** 안 했나 봐요.

○**장경태 위원** 아니, 구체적인 거 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시각 알려 달라고요. 몇 시에 했어요? 몇 시 몇 분?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뭘 이제 와서 살펴봐요.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승 위원** 정확히 인사검증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분명히 보고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자한테 알아보십시오.

○**박은정 위원** 뒤에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김기표 위원** 실무자한테 바로 알아보세요. 그래서 바로, 한 5분이면 그것은 확인될 것 같은데 왜 안 합니까?

○**이성윤 위원** 다 궁금해하니까요, 지금 지시하세요.

○**김기표 위원**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바로 확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법원이랑 헌법재판관은 법무부 인사검증 안 받을 거예요.

○**장경태 위원** 아니, 받는다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주진우 위원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한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만 알려 주세요. 접수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하십니까?

○**박지원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할게요.

현재 사무처장님, 이번 헌법재판관 8인 8 대 0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것은 진짜 세계적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이 신뢰합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우리의 헌법재판관들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그게 안 되면 잠시라도 빌려 가지고 미국 헌법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찬사를 받는데 내란수괴 최측근 그리고 여기에 동조해서 4인 회담, 핸드폰도 바꾼 이런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와서 과연 여덟 분의 그러한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그 질문은 답변드리기가……

○**박지원 위원** 그러면 안 되시지. 그러면 안 되시지요. 최소한 그러한 것은 사무처장이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입장 난처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입장 난처하시다 이거지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를 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 동의가 있어야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지원 위원** 국무총리는 150명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단순 과반수입니다.

○**박지원 위원** 이번에 한덕수 대행의 탄핵 인용을 국회에서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서 보냈어도 탄핵 소추로 받아들였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정족수에 대해서 그렇게 설시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게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지원 위원** 국무총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200명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150명 가지고도 가능한 총리 자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면 뭐예요? 이 말도 못 하고 저 말도 못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0인 이상을 한 것은, 150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설시였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200명이 아니라 150명이라고 인정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의미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의결정족수에 관한 판시 사항이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200석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지원 위원** 대통령 아니면 150석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지원 위원**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자체가 헌법을 파괴하고 저촉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고 하면 앞으로 6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암적인 존재를 탄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상습적 시간 위반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너무 심하네요, 진짜. 적당히는 제가 봐 드릴 수.....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이 법사위원회로 될 군번이 아직 아니야. 저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송석준 위원** 자제하세요.

○**박지원 위원** 건방지게 남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송석준 위원** 건방지게라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박지원 위원** 건방지지. 누가 누구한테 자제하라는 거야.

○**송석준 위원** 자제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 사무처장님, 이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테니까 확인해 봐 주시지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접수됐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아직은 접수된 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도 발표를 했어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그런데 혹시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됐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소원 사건은 지금 2건 접수된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가처분 신청도 1건 들어와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곽규택 위원** 그러면 효력정지 가처분 이것은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재판부에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에 지금 두 분이 4월 18일 되면 임기 만료로 퇴임 하시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재판부 결정 사항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것 결정할 때,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를 시킨 것 중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안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기에 대해서 심리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4월 18일 이후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부터라도요. 지금 본인들에 대해서 임기 연장을 해 주겠다고 하는 법안도 들어와 있고 후임에 대해서도 지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왔으니까 당장 본인들의 지위하고 이해관계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분은 당연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것도 재판부 판단 사항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것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4월 18일 퇴임 전에 어떤 결정이 나야 또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재판부에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곽규택 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해 주시고 그 결정이 난 이상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 없이 지명된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청문회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헌법재판소 입장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어떤 인사검증 같은 것을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에서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사항이고 국회에서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뜻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 온 사례는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확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지금 당장은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법권 독립이나 그런 측면 때문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임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여를 안 했는데, 장에 대해서는 해 왔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뜻에 대해서 해 온 사례도 일부 있었는데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하시고 김기표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재판관 지명은 위헌입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뜻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어렵다고 밝혔고 헌법학자회의에서도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논문을 올려 주세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집에 보시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뜻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국민 대표성을 위반하는 행위로 재판관을 임명하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학연구에서도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지명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금 후보자가 아닙니다. 국회는 후보자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1905년 을사년에 대한제국의 고위공직자들은 덕수궁에서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권한도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나라를 팔아넘긴 과거의 을사년과 똑같이 올해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헌법을 팔아넘겼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은정 위원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헌·위법·불법 행

위가 많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안가회동으로 휴대폰을 폐기했습니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많은 위헌·위법 행위에 법제처장으로서 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은혁 임명, 미임명과 관련해서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직무 유기의 공범으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휴대폰을 폐기하고 비상계엄 당시에 가족을 외국으로 출국을 시켰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하고 비번을 모두 풀어 줬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하고 휴대폰을 압수해서 비번을 반드시 풀어 달라고 하십시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내란의 공범 여부, 직무 유기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 재판 중인데, 전과 4범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현재 총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한 부분이 의견 표명이고 사진 확대한 게 조작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저희가 판결문을 보니까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선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냥 아무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재명이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발언이,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법원이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아는 사람 몰랐다고 하고 자기가 한 걸 남이 시켰다고 하고 증거자료 다 조작됐다고 하고 이걸 문제 삼으면 ‘이건 내 의견이었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하면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21일 날 전주에서—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입니다—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500만 원 당선무효형 선고받았어요. 그 당시 2022년도에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을 거짓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는

데, 그런데 이재명 2심 판결 논리대로 하면 이 사안도 ‘나는 이 정도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부분 심리를 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조배숙 위원 대법원에 가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제대로 판결이 돼야 되는데, 이 6·3·3원칙이 대법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이게 또 대선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 지연을 해 왔어요. 재판 지연을 해 왔는데, 하는 방법은 재판 지연의 교과서나 같은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했는데 다섯 번이나 불출석했지요? 그래서 과태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총 800만 원 부과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포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증인 소환 안 된다, 미룰 수 없다면서 아예 포기를 했어요.

처장님, 재판하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증인 봤어요? 이런 증인 있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 적은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 경험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조배숙 위원 이게 야당 대표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에 따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현안질의인데 당사자가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완규 처장님!

○법제처장 이완규 예.

○김기표 위원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왜 되고 싶으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헌법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김기표 위원** 본인이 임명되면 헌법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현재?

○**법제처장 이완규** 질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지금 현재 임명에 있어서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 것,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도 사실 정치적 정당성이, 민주적 정당성이 사라졌지요. 그러면 그 민주적 정당성이 사라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행정각부의 수반인 국무총리도 역시 민주적 정당성이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관리하는 차원의 일만 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이완규 처장님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누구든지 무효에 대해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 구성이 되면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겠지요. 그 대통령은 역시 선출된 후에도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다시 지명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 본인이 아무리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바와는 또 다른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본인이 어떤 의도,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한 친구다. 본인도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인정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 사건 변호사로도 활동했고 변호사 대리인으로 활동했지요. 그리고 그동안 내란행위의 각종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할 얘기가 있지만 어찌 됐든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보여지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각종 법률적 조언이나 근거를 제시해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과 관계없이 이것은 그동안 해 온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지명에 대해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도저히 헌법재판소의 헌법질서를 세우는, 권위를 세울 수 없겠다 하고 고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주신 의견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 30%인데요. 부적합하다도 37%나 됩니다. 이게 국민께 자꾸 오만

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장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가지고 어떤 정책적 사안으로 논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헌법과 법률과 우리 사회가 지켜 온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경계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또 아주 험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을사년에 헌법을 팔았다’ 이런 극언을 하시고 법제처를 그동안 이끌어 오신 이완규 처장께서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도, 그렇게 오래 본 분한테도 우리가 어떤 인품과 실력으로 일을 해 오신 분인지 다 알면서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면전에서 모욕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말하고 싶지만요 자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선을 넘어서 막 얘기하자고 하면 할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국회의 모습은 더 국민 앞에 초라해질 것입니다.

이완규 처장께 여쭤볼게요.

아까 5·18 유공자 신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래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다 이런 건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법제처장 이완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계엄이 전국 확대되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린 상태에서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에 가 있으면서 인천에서 몇몇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5·18의 진상을 좀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 벽보 이런 활동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포고령 위반으로 검거돼서 구속됐었습니다. 구속돼 가지고 안양구치소에 있다가 석방됐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거는 기소유예 처분 받으신 거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준태 위원 아까 정당의 당원인 적은 없다고 확인해 주셨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오늘 여러 말씀 나왔는데 재판관 지명에 대한 소회나 각오 있으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법제처장 이완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께서 결정을 하셔서, 후보로 지명하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행정처장님,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 구속취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균택 위원 이때 검찰의 구속 일자 또는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가장 큰 이유로 댔고 아마 부수적으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구속 권한의 문제가 있느냐

에 약간의 의문을 첨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법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다고 혹시 믿지는 않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4일 날 내란 사건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순수한 법리적인 의심 때문에 구속취소를 했을 뿐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4월 14일 날 법정에서 자기의 정당한 권한으로 법정구속을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급자들은 구속이 돼 있는데 지시자는 내버려두겠다고 한다면 형평에도 안 맞고 그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운 처사일 것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구속 여부에 관한 부분도 재판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 위한 재판, 신병 처리를 하라라고도 말씀을 못 하실 입장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를 비롯해서 모든 현직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제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이 영상이라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마 모든 법관들도 다 주목하고 잘 지켜보리라 믿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귀연 부장님이 꼭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순수성을 한번 입증해 주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힘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해서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이 있을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판이 진행되느냐 이 쟁점을 어느 분이, 국힘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헌법 교과서를 열 권을 찾아봤더니 세 권은 그 쟁점 자체를 인식을 못 했는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일곱 권이 여기에 대해서 쟁점으로 삼아서 논하고 있는데 재판이 당연히 중단된다,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기소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권영성, 김하열, 성낙인, 정종섭, 이효원, 김선택, 한수웅, 이름만으로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이런 책에 서술을 해 놓고 있는데 그거 혹시 처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그런 책자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제기가 공소유지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문하세요.

○**서영교 위원**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질문할게요.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까 답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지금은 궐위 상태입니다.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권한대행이 대통령이에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권한대행이 대통령 아니지요? 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대통령은 아니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서영교 위원 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니에요. 권한대행은 총리지요?

두 번째, 한덕수 총리가 언제 헌법재판관 지명하겠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언제 이야기 합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말하세요! 언제 연락 왔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인사와 관련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 언제 연락 왔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

○서영교 위원 그것도 답 못 하고.

윤석열, 나중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시켜 준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그거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서영교 위원 없고, 없는 거 맞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서영교 위원 확실해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확실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확실해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확실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연락 왔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서영교 위원 언제 연락 왔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 부분은 정부의 내부적인 인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언제 연락 왔어요? 한덕수 복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언제 연락 왔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덕수가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도 아

니면서, 대통령이 과연당했는데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할까? 지명하려고 할까? 이것은 윤석열과 한덕수가 내통하고 있는 거다, 난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법제처장은 같이 함께 부화뇌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관에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법제처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지금 이 나라의 법제처장으로 있는 게 맞는가…… 맞지 않잖아요. 그만둬야지요. 그런데 무슨 욕심이 지나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도 없는데 지명받았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윤석열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낱낱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저에 요리사들이 주르륵 들어갔다가 주르륵 나오고 한밤중에 차들이 주르륵 나오면서 과연 무슨 파티를 했는지……

(영상자료를 보면)

저 장면 봐 주세요. 차들이, 요리사들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한 번 더 틀어 주세요, 요리사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 더 틀어 주세요, 요리사 모자.

요리사 모자가 쭉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이 훨씬 더 많은 자료에 한밤중 11시에 차가 출출이 나오는 장면부터……

지금 과연당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 비우라며, 김은혜가 나와서 왜 청와대를 비우지 않냐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호텔에 있다가 자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과연당한 지 언제인데, 내가 아크로비스타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나가지는 않고 요리사들이 저기를 뛰어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내가 더 틀면 탑차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밤중 11시에 차들이 주르륵주르륵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장은 대통령에게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못 하고 마흔혁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아닌 자가……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지명하는 것에 맞춰 가지고 뭐 잘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그만두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김정원 쳐장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결정이 날 때 여러 보

도 중에,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에 복귀시켜서 대선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그리고 예측건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연으로 현재가 엄중히 심판하고…… 이런 예측 보도들, 분석 보도들 좀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런 보도들이 있었던 것은……

○**박범계 위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얼핏 기억이 납니다.

○**박범계 위원**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또는 헌법소원이라든지 거기에 떨린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접수가 되고 있어요.

헌법적으로 행정처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보낸다 하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원에서 기일 통지서 보내듯이 소위 이 문서의 송달과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 그래서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어요, 국회에.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것을 수리해야지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박범계 위원** 예민한 부분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정상적인 어떤 인사청문회 진행까지 나아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회의장은 이 지명에 대해서 위헌 무효다, 그런 입장에서 인사청문을 개시할 수가 없다. 그것은 자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문서 송달처럼 그것을 내가 신고 접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 기간이 도과해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소정의 독촉 기간을 지나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법리상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논리가 돼 있습니다, 법리가. 일용 한번 현재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법원에, 행정법원에 지금 이와 같은 헌법재판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 무효인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심리를 준비하셔야 될 텐데 행정처장님, 모든 걸 다 떠나서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두 분의 현재 재판관이 계실 때 저는 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빨리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헌법적 소위 공백 상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혼란 상태가 방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속하게 현재가 판단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질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사안의 성격상 재판부에서 협의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협의하게 아니면 신속하게? 둘 다? 신속하고 협의하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

니다.

○**박범계 위원** 신속할 필요성이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필요성은 아마 있다고 재판부에서도 판단하실 겁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법제처장님, 오늘 우리 처장님 인사청문회를 한 것 같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참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말을 한다지만 내란수괴 최측근이다, 집사 변호사다, 내란 동조 피의자다 이리면서 굉장히 인격적…… 또는 모욕적인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 잘 참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동규가 측근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측근이 되려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언론 보도 나온 거 보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법제처장 이완규** (고개를 끄덕임)

○**유상범 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이완규 처장님 관계가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이런 관계와 비견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관계 아니지요? 단순히 대학 동창이고, 그렇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또한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거 이게 다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대통령후보가 돼서 지금 사법 처리를 받네 안 받네 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내란 동조 피의자로 고발됐다고,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자격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고발하는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고발하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지만 고발됐다는 그 사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가에서 저녁 모임을 했던 것은 정말 아무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대로 다 밝혀져서 아마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이완규 처장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입장은 지난번에도 밝히셨습니다. 그것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었으면 반대했을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무슨 물이처럼 이완규 처장을 하나의 내란 세력에 관계된 사람으로 규명 지으려는 이런 모습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밝히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혀 사실은 찾지 않고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명 짓고 선동적인 언사로만 반복하는 이 행태도 자제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제처장 이완규** 대통령께서 탄핵되셨는데 그 내각에서 국무위원은 아닙니다만 저도 중앙행정기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책임, 도덕적인 것은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정부의 조직에 있었다는 그것만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내란 동조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 기억력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체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는 말을 누가 했지요? 오전에 제가 말씀.....

○**법제처장 이완규** 아까 보여 주신 것에 이르면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 아마 그때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정청래**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런 말 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위원장 정청래** 본인의 지금 존재와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려면 지금부터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현재 재판관 등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을 혹시 누가 했는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유명한 분인데?

○**법제처장 이완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정청래** 기억 안 납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에 권성동 당시 박근혜 탄핵소추위원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대통령 지명 재판관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한 사람은 지명한 예가 없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말인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아까 그 부분은 저한테 비디오 영상을 보여 주셨던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아까 보여 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권성동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이완규는 지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권성동이 합작해서 이완규처장 같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주장해 놨어요. 마음이 아프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구체적으로……

○**위원장 정청래** 김석우 차관, 제가 소추위원 하다 보니까 여러 탄핵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젠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앉아 있던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닙니다. 저는 최근……

○**위원장 정청래** 통합진보당.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 2014년도.

○**위원장 정청래** 위헌 심판 그때 앉아 있던데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무슨 자격으로 앉아 있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때는 제가 소추인 측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정부를 대신해서 간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때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결정적 이유가 내란 선동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 정청래** 내란 선동이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도 평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수괴 보유당이에요. 그리고 아직 1호 당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하게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하는 위헌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완규 처장을 지금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유상범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김석우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석기 씨가 진보당 당원이었고 그리고 내란을 선동한 예비·음모 이런 것 때문에 진보당이 해산됐어요. 그런 이유로 진보당이 해산됐으면 국민의힘은 백번 정당 해산당해야 됩니다. 그런 심판을 예상하고 이완규 처장을 이번에 지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우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장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왜요? 아니, 내란을 직접 저지를 당의 당원인데, 내란 선동 예비만으로도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백번 정당 해산시켜야 돼요.

○**유상범 위원** 누가 어느, 누가 내란을 저질러? 아니고.

○**박준태 위원** 그러면 회의는 같이 왜 하십니까? 왜 불렀어요?

○**위원장 정청래** 같이 왜,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같이 왜 회의를 하냐? 아직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긴급현안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혹시 기관장님들께서 못다 한 얘기 있으면 잠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운 처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석우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정원 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완규 처장님?

○법제처장 이완규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0인)

성명	직업	사유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전 대통령 권한대행	내란죄 관련 및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내란죄 관련 여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 12. 3. 거시경제 · 금융현안간담회 (F4 회의)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4. 12. 3. 거시경제 · 금융현안간담회 (F4 회의)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4. 12. 3. 거시경제 · 금융현안간담회 (F4 회의) 관련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업무지시 쪽지 전달 및 이행 여부 관련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마은혁 미임명 논의 국무회의(2025. 3. 4.) 참석 관련
박현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친윤 경찰 고위직 기습임명으로 경찰장악과 국회봉쇄 체포조 지원 가담 의혹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12월 3일 비상계엄 적법성 및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 등

성명	직업	사유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대통령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참고인(4인)

성명	직업	사유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통령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이완규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